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10. 4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10. 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10.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성광식)

가. 제안이유

○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안 제23조의3)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페어차일드 회사도 감면대상입니까?</p> <p>○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데 대상지가 있습니까?</p> <p>○ 조례개정에 다른 의미는 없는지요!</p>	<p>○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유재산은 관련이 없습니다.</p> <p>○ 아직은 없습니다만 향후 상동 개발이 되면 해당되겠습니다.</p> <p>○ 행자부 준칙, 도 조례와 일치시키는 안입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행자부 준칙안대로 개정함이 타당.

나. 반대토론

○ 특정 외국인 투자기업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 요지

○ 별 칩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0호
의결년월일	2000. 10. 20 (제81회)

제출년월일 : 2000. 10.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안 제23조의3)

[수정안 포함]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 본문 중 “영 제92조의2의”를 “외·투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를 “외국인 투자기업에”로 “사용료의 감면율은”을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제19조의3 각호와 같으며 감면율은”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를 “외·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투법· .....외국인 투자기업에..... .....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제19조의3 각호와 같으며 감면율은.....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경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 부분	가. 외·투법..... ..... .....

<p>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p> <p>나.~사. (생략)</p> <p>2. (생략)</p> <p>가.~바. (생략)</p> <p>3. (생략)</p> <p>가.~사. (생략)</p>	<p>.....</p> <p>.....</p> <p>나.~사.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바.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가.~사. (현행과 같음)</p>
--	---